

#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 경과

-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8. 3. 4.
- 회부일 : 2008. 3. 5.
- 상정일 : 2008. 3. 11.(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제천시장

### 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생활환경팀장 김동석)

#### 가. 제안이유

장래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조성한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일부 시설을 위탁 운영코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##### 【 위탁개요 】

- 위치 : 제천시 신동 625번지(자원관리센터 내)
- 위탁운영대상 시설

시설명	시설용량	위탁운영조건				비고
		위탁방식	운영관리비	운영비지원	위탁기간	
소각시설	50톤/일	의무위탁	수탁자부담	지원	1년	08. 4 가동예정
음식물사료화 시설	20톤/일	의무위탁	수탁자부담	지원	1년	"
재활용품선별 시설	30톤/일	시공사 위탁	수탁자부담	지원	3년	07. 11 정상가동
유리온실	820㎡	임대	수탁자부담	없음	3년	08. 5 준공예정

### 【 수탁자선정 기준 】

- 폐기물처리시설(소각, 음식물사료화, 재활용품선별시설)
  - 입찰안내서에 의한 시공사 의무위탁
  - 전문기술, 시설설계에 대한 이해도, 비상사태의 대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능력이 검증된 당해 시설을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
- 조경시설(유리온실)
 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 경쟁 입찰
  - 시설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 거주자로 제한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석영)

#### [ 법적검토 ]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,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등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,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# [ 행정적검토 ]

- 위탁하고자 하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전국최초 주민공모제에 의해 부지가 확정되어 2004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4년 6개월동안 4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되어야 할 것임.
- 따라서 시에서는 자원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시설이 복합적인 플랜트 설비로서 시설물 안전이 강조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저감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로 상당기간의 운영경험이 필요하며, 본 시설물 운전 요원의 일정기간 학습을 요하는 시설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.
-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요 시설물중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한 위탁방식, 운영관리비 부담, 운영비지원에 따른 예산지출 수반 사항 등 위탁운영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.
- 향후 첨단시설을 갖춘 친환경적인 자원관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
  -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소각처리와
  - 음식물 사료화 시설의 악취 최소화와 저비용의 효율적인 운영
  - 재활용 선별시설의 재활용률의 제고로 매립·소각량의 최소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함에 있어 위탁관리의 효율성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4. 질의 답변 요지

### 가. 질의요지

- 주요시설물에 대한 위탁방식, 운영관리비 부담 문제,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?(조덕희 위원)
- 위탁운영시 4억8천만원 적영운영시 4억4천만원으로 4천만원의 예산을 더 소모하면서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?(김병창 위원)

- 소각이나 음식물사료화시설은 위탁기간이 1년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을 3년으로 정한 사유는?(김명섭 위원)
- 타 지자체의 운영형태와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?(유영화 위원)

#### 나. 답변요지 <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>

- 소각시설,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1년간 시공사에 의무 위탁, 벽산 건설에서 시공한 재활용선별시설은 관련법에 의거 당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시공한자에 위탁, 유리온실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예산지원 사항은 검토후 금액을 확정지을 예정임
-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위탁을 많이하고 있는 추세로 4천 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나 위탁의 방향이 좋을 것 같음
- 재활용선별장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정하라는 환경부 지침과 선별장을 위탁받는 업체에서도 3년정도는 되어야 장비 투자등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판단
- 기술과 능력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보겠으나, 현재 본 시설은 전국공모로 제천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. 따라서 제천지역의 인력을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계약할 계획임

#### 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#### 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#### 7. 심사결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#### 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1부. 끝.